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10. 13 선고 2015가단620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17. 5. 23 선고 2016나58175 판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 10. 13 선고 2015가단6209 판결

전 문

원고A

피고B

변론 종결 2016. 9. 1.

판결 선고 2016. 10.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23.부터 2015. 1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0. 12.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2. 15.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진주저축은행으로부터 빌린 돈 약 50,000,000원과 이자를 대신 갚아주었고, 원고는 그 다음 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4. 10.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각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0,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쓴 다음,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원고 명의의 위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접수 제6592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미국에 계신 원·피고의 아버지 C은 원고에게 아래 표의 합계란 기재와 같이 미국 돈으로 278,741달러를 보내 주었고, 그밖에도 2005. 무렵 인편으로 17,000,000원을 보내 주었다.

2004. 11. 19. 이전	32,985	을 제4호증의 2
2005. 5. 24.	18,974	"
2005. 6. 3.	18,975	"
2005. 6. 9.	18,974	"
2005. 6. 14.	10,975	"
2005. 9. 20.	15,000	"
2005. 10. 18.	1,000	"
2006. 2. 22.	18,974	"
2006. 3. 3.	18,974	"
2006. 3. 15.	18,974	"

2004. 11. 19. 이전	32,985	을 제4호증의 2
2006. 11. 3.	14,974	"
2007. 1. 9.	14,974	"
2008. 3.	50,000	"
2008. 4. 15.	24,988	을 제4호증의 1
합계	278,741	-
날짜	금액(원)	증거
2005. 5. 초	17,000,000	을 제4호증의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빌리기로 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써 매매의 형식을 빌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썼는바 그렇다면 위 매매계약은 양도담보 또는 매도담보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빌려주기로 약속한 40,000,000원을 빌려주지 않음으로써 양도담보 또는 매도담보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지체 또는 거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의 송달로써 위 의무의 이행을 최고하며, 피고가 상당기간 내에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위 양도담보 또는 매도담보 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담보 또는 매도담보 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2014. 10.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1/2 지분에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매매계약서로써 매매계약이 맺어진 것이라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기 다음 날인 2014. 10. 23.부터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8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빌려 쓰고 남은 채무 18,000,000원을 대신 갚아 주고 위 부동산에 관하나 1/2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을 뿐, 위

지분을 이전받은 다음 원고에게 40,000,000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최소 450,000,000원 이상의 돈(앞서 본 바와 같이 원·피고의 아버지 C이 피고에게 보내준 돈과 피고가 원고 대신 갚아준 빚 합계 68,000,000원 말고도 피고가 승용차 구입비로써 준 18,000,000원, 피고의 여동생 D가 원고에게 생활비 등으로 준 돈 60,000,000원 등)을 가져다 쓰기도 거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빚을 내어 쓰는 등, 위 부동산을 원고 명의로 계속 둘 수가 없어서 피고가 원고의 빚 18,000,000원을 대신 갚아 주고 위 지분을 넘겨받았을 뿐이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보더라도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 을 제1호증,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볼 때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84,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빌려 쓰고 남은 채무 18,000,000원을 대신 갚아 주고 위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1/2 지분을 이전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이지형

별지